

비즈니스 분쟁의 해결방안 중재제도 활용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중재란?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리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로 전문성, 신속성,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 간의 상거래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제한적인데 비해 중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중재의 장점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여 중재의 장점을 살펴보면,

- ◎ 첫째, **단심제**라는 것이다. 중재는 소송이 3심제인 것과 달리 한 번의 중재판정으로 모든 분쟁이 최종 해결된다. 즉 불복항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 둘째는 **신속한 분쟁해결**이다. 단심제로서 집중적인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 처리기간은 국내중재 약 6개월, 국제중재 약 7개월이 소요되어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된다.
- ◎ 셋째는 **저렴한 중재비용**이다.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한 절차라는 점에서 분쟁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은 대체로 소송비용이나 외국중재기관의 중재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넷째는 **국제적인 효력**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 다섯째는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다. 분쟁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참여하므로 소송에 비해 합리적이며 보다 실제에 접근하는 판정이 가능하다
- ◎ 여섯째는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이다. 소송에 비해 당사자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에 판정을 내리는데,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

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집중심리로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절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 일곱째는 **심리의 비공개**이다. 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 중재합의 절차

이러한 중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계약)가 있어야 한다. 합의방식으로는 상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예 :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삽입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중재합의는 가능하지만 불리한 측면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표준 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영문계약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국문계약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알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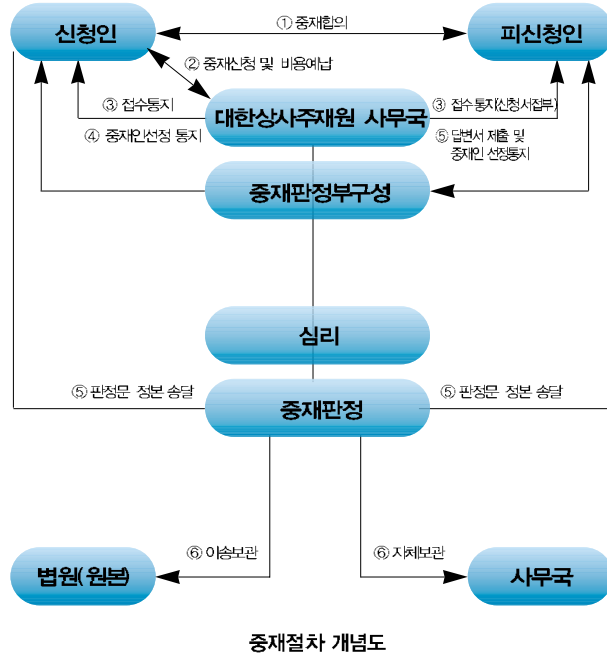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알선과 상담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알선은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 경험이 많은 중재원 직원이 알선자로 관여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05년 진행한 알선에서 합의 성공률은 5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알선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알선합의의 경우에는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상담안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전문 상담요원이 상사분쟁 예방 및 해결안내, 계약서 작성, 외국의 법령, 관습 등의 사항을 전화, 내방, 서면(인터넷)을 통해 상담하고 있고, 상담비용은 알선과 마찬가지로 무료이다.

★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 02-551-2000)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정 상설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66년 3월 발족하여 40여 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정 체결

벤처기업의 중재제도 활용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공동 협력기로



협회(회장 조현정)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과 지난 2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정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의 각종 비즈니스 분쟁을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국내 외에서 사업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조정·알선·상담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것. 또한 그동안 축적된 각종 분쟁 및 중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사례집 발간,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에게 경영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

협회 조회장은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벤처기업들의 기업활동 영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특히 국제특허, 전자상거래 등 벤처기업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